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관련 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8.28.)
-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60(2020.8.28.)

2.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 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시설 및 단체에 공문 등으로 안내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 적용 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2020년 8.31(월). 0시 ~ 9.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년 8.30(일). 0시 ~ 9.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교 육 부 장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권동주 보건사무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2020.8.28.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7320 ((2020.8.28.))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 www.moe.go.kr
전화 044-203-6548 전송 044-203-6438 / two51991@moe.go.kr / 공개